

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정 30313 - 24401	(전화: 445-8705)	시행일	시행일
보존기간	영구·순영구 10.5.3.1.	구정장	시	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			
시행일자	86. 8.			
부처 장	영구	문서통제		
도시경비과장		문서통제		
도시경비과장		문서통제		
기안책임자	도시경비과장	문서통제		
경유 수신 참조	국안참조	반신면의	국안참로	
제 목	도시계획시설 (공원) 지적승인			
	(제 1 안) 내부결재			
	1. 도시 30312 - 402 (86. 8. 13.)호와 관련입니다.			
	2. 우리구 관내 옥수동 7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(공원)에 대하여서			
	서울시 고시 제 579호 (86. 8. 13.)로 변경 결정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			
	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고시안과 같이 지적승인으로 적어			
	다.			
	(제 2 안) 고 시 안			
	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	
	도시계획시설 (공원) 지적승인			

지방자치  
 행정부  
 도시경비과장  
 도시경비과장  
 도시경비과장

본대조필



( 제 4 안 )

수신 총무처 장관

발신 : 시 장

참조 법무담당관

제목 관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게재구분 : 고 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지적승인

다. 관련법규 : 도시계획법 제 13조

첨부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 제 5 안 )

수신 서울 특별시장

발신 : 구 정 장

참조 시민과장

제목 관연 날연 의뢰.

1. 다음 사항을 관연 날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총무처 관보 게재용 1 건

나. 건설부 지적 승인 보고용 1 건

2053

첨부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( 제 6 안 )

수신 수신처 참조

발신 : 구청장

제목 도시계획시설 (공원) 지적승인 통보

1. 석물시 고시 제 579호 (86. 8. 13.)로 변경 결정된 본내 옥수동 78

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(공원)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

바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.

2. 해당 동장은 본 내용을 격식판에 격식하고 주민동포에 탄전을 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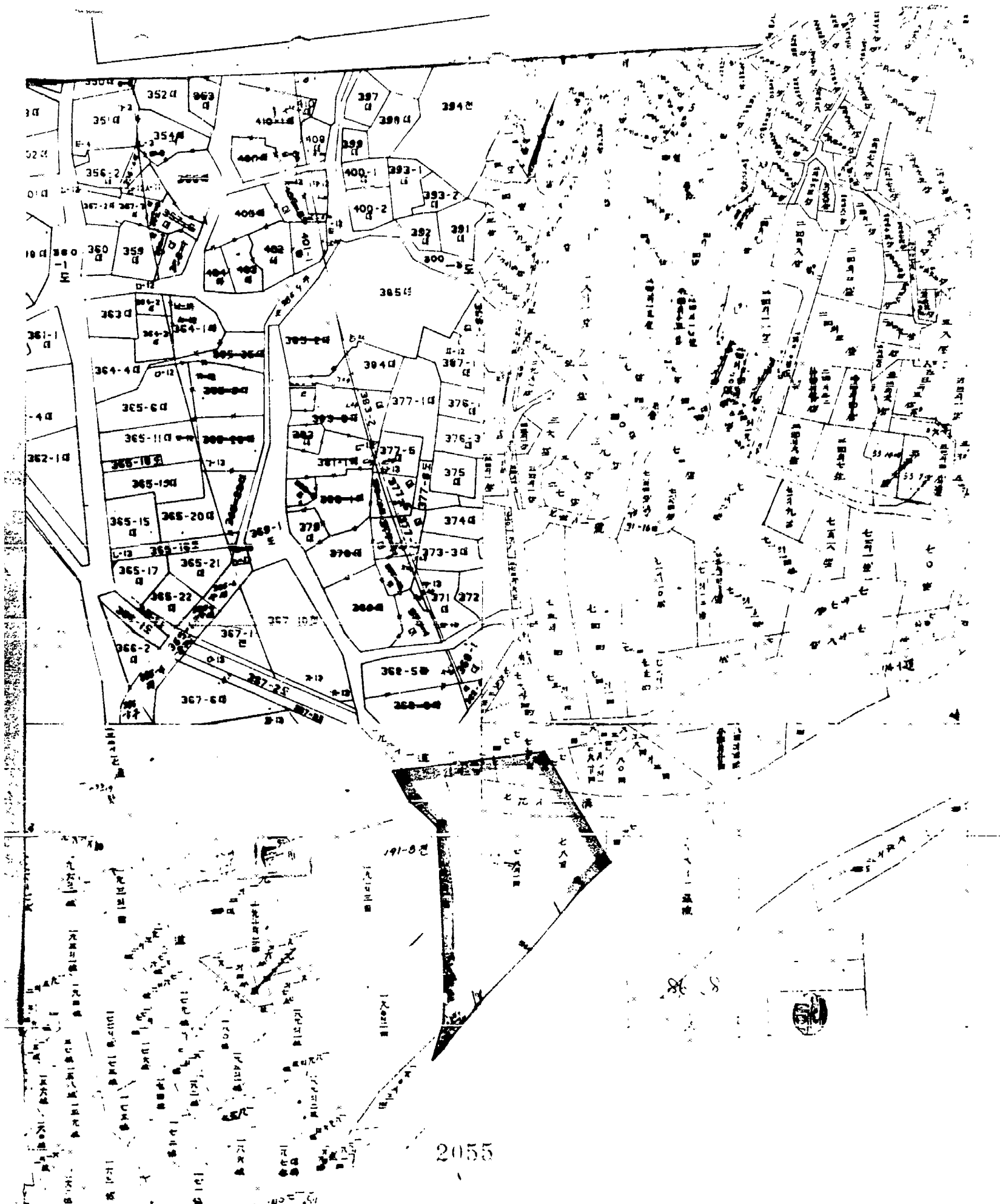
것.

첨부 고시문 사본 몇 드면 1부. 끝.

수신처 총무과, 기획홍사과, 재무과, 토목과, 건설관리과, 주택과, 공원녹지

과, 옥수동장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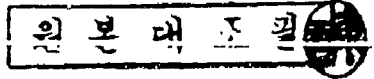
건축법령시행령 제 32조

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

1986. 3.

- 1. 사업명 :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
- 2. 사업주체 : 고성개발(주) 대표 고성덕
-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, 규모



가. 위치 : 용산구 한남동 730외6필지

나. 면적 : 5,704.51㎡

다. 규모 : 아파트 10층 1동 58세대

지방건축기원  
상 동 수

- 4. 사업기간 : 85. 10. - 86. 10. 31.